

연말정산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textcircled{1} \quad (2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times 15\%) \times 20\% = 450\text{만원}$$

$$\textcircled{2} \quad \text{한도액} : \text{총급여액} \times 20\% \text{와 } 500\text{만원} \text{ 중 적은 금액} = 500\text{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2.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종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 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 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3. 중고차·골프회원권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조의2)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구입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중고차 포함) -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 4.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소득세법 제 51조)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 5.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 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 표준공제: 60만원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p>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현행과 같이 60만원</p>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

생활정보 2

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 6.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p>〈신설〉</p> <p>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p>	<p>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위·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7. 근로자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법령제 110조의 3)

종 전	개 정
<p>과세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p>⇒ 일용 근로소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 세율 : 9% 	<p>과세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p>⇒ 일용 근로소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 세율 : 8% <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p>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면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 · 기계장비 · 건설 · 전기 · 전자분야 학원 등

▶▶ 8. 소득세율 1%인하 (소득세법 제55조, 제 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89조)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 · 중 · 고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강지원금은 제외

▶▶ 9.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60조의4, 시행령 제 208조의 4)

종 전	개 정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 · 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 · 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 ·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생활정보 ②

▶▶ 10.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법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 9조)

종 전	개 정
<p>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 비과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40만원 한도 • 근로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광산 · 어업 · 운전관련 근로자 	<p>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 우편물 집배원(91311) - 신문 배달원(91312) - 물품 배달원(91313) - 수하물 운반원(91314) - 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p>⇒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p>

▶▶ 11. 기부금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보관의무부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 시행령 제 208

조의 3)

종 전	개 정
<p>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p> <p>조의 3)</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한 자 •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보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p>⇒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을 감안</p> <p>•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p>

※ 학술 · 예술 ·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 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 12.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영수증 양식보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u>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u> •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의료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